

자산관리위탁변경계약서

주식회사 하나리치업제 3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갑”)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을”)은 2021년 5월 13일 체결하여 2021년 6월 23일 변경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이하 “원 계약서”)을 변경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29일 다음과 같이 자산관리위탁변경계약(이하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1. 변경계약에 따라 원 계약서 별지1. 수수료 중 매입수수료 부분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한다.

변경 전	변경 후
<u>별지 1. 수수료</u>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입수수료 “갑”이 “을”에게 지급할 매입수수료는 <u>금</u>이 <u>십오억원 (₩2,500,000,000)</u>으로 하며, “갑”은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u>별지 1. 수수료</u>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입수수료 “갑”이 “을”에게 지급할 매입수수료는 <u>금</u>이 <u>십억원 (₩2,000,000,000)</u>으로 하며, “갑”은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2. “변경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1년 5월 13일 체결하고 2021년 6월 23일 변경 체결한 “원 계약서”에 따른다.
3. “변경계약”은 2021년 6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변경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원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원 계약서”의 각 조항은 “변경계약”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추가된 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유효하게 해석되고 적용된다.
4. “변경계약”이 정당히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보관하기로 한다.

2021 년 6 월 29 일

“갑”

주식회사 하나리치업 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하나자산
신탁 내

대표이사

박영희 (인)



“을”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주)하나자산
신탁 내

대표이사

이창희 (인)

